

디지털 아동 성착취 대응현황과 해외 인공지능 범죄 예측 시스템 비교분석

김혜진

글로벌 디지털 성범죄 정책 연구소 대표

Current Status of Response to Digital Child Sexual Slavery and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Crime Prediction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yejin Kim

Global Digital Sexual Crime Policy Research Institute, CEO

요 약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 사회가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크므로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초협력적인 법적, 사회적,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회는 발 빠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도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아동 성착취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아동 성착취의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고 특징, 발생원인 및 실태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및 삭제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추적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성범죄 특성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ual Crimes' that changed rapidly in recent years. It has identified the so-called "Telegram sexual harassment and exploitation" incident on the front page. We also want to analyze this and draw up policy suggestions that can help prepare social measures. In the wake of the Telegram sexual exploitation scandal, The National Assembly is quickly proposing related bill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even a clear concept and defini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have not been made yet. The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victims is also insufficien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harassment. We will look at the features, causes, and conditions. In addition, it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Sexual Crimes distribution and deletion of domestic, foreign platforms. Major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 S. A. refer to cases in which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re actively used to protect victims and track perpetrators.

Key Words : Telegram Sexual Exploitation Cases, Digital Sexual Crim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Digital Sexual Crime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Author : Hyejin Kim(rossojk@gmail.com)

Received June 19,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July 2, 2020

Published July 28, 2020

1. 서론

초고속 경제성장이 낳은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력을 갖춘 사람들은 삶의 편리를 보장받는 반면,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소위 '을'이자 '약자'가 되어 스스로의 신체를 유흥의 도구로 제공하기도 한다. 심지어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조차 '성매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원조교제를 시작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근래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에도 다수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를 당혹케 했다.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단지돈을 벌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덤덤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했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폭력의 한 종류로 자리 잡으며 관련 법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뒤처져 여성의 피해를 적시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1]. 인공지능, 5G 등 기술 문명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과 소비가 편리한 시대로 변모함과 동시에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은 문명 발달의 수혜자로서 정보와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인터넷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안성이 강한 SNS 플랫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나, 단지 처벌 수위 조절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 혹은 '포르노'라는 단어가 아닌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 사회가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착취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초협력적인 법적, 사회적,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1년 개설된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로 세상에 알려진

'다크웹' 문제는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로 막을 내리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 사이트 회원 중 해외 거주자는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만으로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에서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서명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법안과 정책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2].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아동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상 공개를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 가해자는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마주했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게 했다[3-5].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회는 발 빠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도 미비하다. 기존의 제도적 대응 방안 검토 작업과 다른 나라의 대응 방안 비교·분석을 통해 디지털 아동 성착취 범죄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과, 세분화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국내외 관련 정부 기관의 통계 및 조사자료와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구체적인 문제점 분석을 위해 그동안의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다. 각 외국의 현황 분석을 위해 해당 국가의 법령과 정부기관의 통계, 공식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입법 자료 등 공적 자료를 포함한 시민단체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관련 자료들과 학술 연구 논문도 검토한다.

또한, 아동 성착취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아동 성착취의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고 특징, 발생원인 및 실태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및 삭제 현황을 고찰할 것이며 기존 공문 및 응대 매뉴얼의 한계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국 비영리기업 쏰(Thorn)의 아동 성범죄 예측 활용을 살펴봄으로써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

는 대응방안 및 정책개선 도출에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아동 성착취의 정의

2.1.1 아동 디지털 성착취 개념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자를 양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치·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어나던 성범죄가 조금씩 발생하다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현대의 개방된 성 문화 속에서 성에 대한 문제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가 성 문제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위기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잘못된 성 인식이 지속될수록 여성 및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6,7].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영어로 ‘Sexual Exploitation’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매매(prostitutio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등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착취 유형 중 청소년 성매매(prostitution)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된 표현이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해석할 때 성인 포르노와 동일 선상에 놓고 상업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 용어에도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부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8,9].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성을 매개로 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묻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들이 동일하게 범죄자 선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심신(心身)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성착취’의 범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대응책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온·오프라인 그루밍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행위를 ‘성착취’로 해석하는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10].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3장에 따르면 피해 미성년자는 성매매를 한 ‘대상’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를 당한 ‘피해’ 아동·청소년으

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되면 「소년법」 상 보호처분이라는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도·보호’라는 법의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대부분의 대상 아동·청소년은 이를 선도·보호가 아닌 ‘처벌’이라고 인식한다[11,12].

또한,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청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가 협박하는 수단이자 회피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피해 미성년자가 경찰에 성착취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대상 아동·청소년이 되면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가 2차 가해하기 용이한 상황이 조성되면서 아동·청소년은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속히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12-14].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해당 내용이 들어간 ‘아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무부는 법이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우려하여 검토하겠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2018년 2월 해당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미성년자가 성착취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에 다가가기 힘들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제거와 함께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10].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를 통해 상대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Fig. 1을 보면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즉 인터넷과 SNS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접근 경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부터 사용연령을 확인한 결과 17세가 66.2%(21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때 조사대상인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곳은 전체의 15.7%에 불과했으며, 모바일 앱도 317개 중 87.7%에 해당하는 278개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성인인증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서 벗어나 채팅 앱을 통해 대면 만남을 시도한 청소년의 64.4%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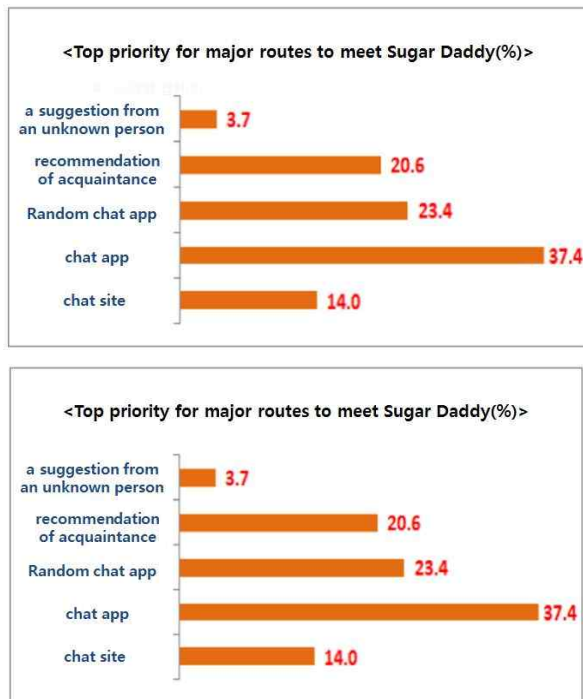


Fig. 1. 2016 Survey on Prostitu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15]

경험했는데, 구체적인 피해내용(복수응답)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62.9%), ‘임신/성병’(48.6%) 순이었다. 그러나 성착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중 절반에 가까운 48.6%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과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그루밍과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통제하는 수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조건만남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만남 상대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49.1%)과 ‘불법 랜덤채팅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12.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 및 가중처벌이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원조교제나 성매매를 넘어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그루밍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빠르게 퍼지는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현재의 수사방식과 인력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범죄자는 이 점을 악용해 보안성이 강한 해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암호화페로 거래하는 등 더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다. 특히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웹사이트가 15.7%에 불과해 범죄자 중 미

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5].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채팅 앱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른 결과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16].

2.2 아동 디지털 성범죄 발생원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속 가해자들은 다수 피해자의 영혼을 잠식하는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각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연쇄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더해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17].

이 사건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둔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겹쳐서 대로 겹쳐 고름이 터지듯 발생한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남성들은 가부장적 문화, 군대 문화, 기업의 수직적 조직 문화 등을 경험하며 성구매나 성착취를 집단적인 문화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게 되고 그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서서히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사회적으로도 포주, 인신매매 문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성구매에 대해 낮은 범죄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와 인식 아래 그릇된 성관념을 가진 범죄자가 양산되었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18].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중 네이버에서는 18개(16.7%), 구글에서는 90개(83.3%)가 검색을 통해 쉽게 노출되었다. 성인인증도 68.5%의 웹사이트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면책고지(인증과 미인증의 중간 형태로, 성인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외국 사이트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엄격한 성인 인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의 형태를 갖춘 성인인증 앱은 15.7%에 불과하다. 개발자가 허용한 앱 사용 연령은 ‘17세(201개, 66.2%)’가 가장 높았고 ‘3세(49개, 15.5%)’, ‘12세(42개, 13.2%)’, ‘7세(15개, 4.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로 보아 성매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앱은 청소년이 쉽게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으며, 형식적 절차상 앱 사용연령을 3세 또는 7세로 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연령 제한에 대한 법적 효력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19].

3. 아동 디지털 성착취 실태

3.1 국내외 플랫폼 디지털 아동 성범죄 영상 유통 현황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는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장 많으며, 디지털 성범죄물 심의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이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물 심의 건수는 1만1천720건이었는데, 방심위의 권한과 능력 밖의 영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물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그 공급량을 쉽게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심의가 오픈웹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크웹(딥웹)을 포함했을 때 실제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규모는 더 클 것이다[20]. 방심위는 차단기술의 한계로 오픈웹상 디지털 성범죄물만 심의하고 있으나 문제는 다크웹이다. 이곳에서는 마약 거래, 음란물 유통, 불법도박 등의 범죄가 성행한다. 음란물 공급자들은 오픈웹에서 유도전략으로 사진을 유포한 후 다크웹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다.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는 현재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21].

3.2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3.2.1 기존 법안 및 응대 매뉴얼의 한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편집물)과 같은 불법 촬영물의 편집·합성·가공 및 유포 행위와 영리 목적의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처벌유형의 일부만이 확대된 것일 뿐 사각지대는 아직 남아있다. 현재 자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물리적 가해와 피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형법상 성폭력범죄는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간음(성기삽입) 또는 추행 행위를 기본적 형태로 구성한다. 또 익명성과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정으로는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때문이었다. 성착취의 대부분은 유포 협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유포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만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이라는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친다. 현재 존재하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혹은 비동의의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만으로 재범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도입하고 형량을 강화해 유포 협박이 디지털 성폭력의 일환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다운로드의 개념에서 머무른 불법 촬영물 ‘소지’의 개념을 디지털 이용 행태에 따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스트리밍하거나 단순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촬영물의 이용 행태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따라서 ‘소지’ 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점검하고, 기존 법률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디지털 성범죄 성인 피해자를 위한 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로 처벌 가능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의 단순 소지 행위는 영리적 목적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 관리와 유통 방지에 관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중요한데, 텔레그램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 거부 의사를 밝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과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불법 촬영물만을 효과적으로 스캐닝할 수 있는 기술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2].

3.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현황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비주류 사회 문제로 방치해왔던 디지털 성착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지원 체계는 피해자에게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 쉼터연계,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세부적인 법률 지원 내용에는 법률전문가를 통한 민형사상의 법률 상담 지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는 성착취물

에 대한 불법유해정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1호인 음란한 전기통신에 해당하거나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심의를 거쳐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혹은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23,24].

이렇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나름의 지원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 이유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에 관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피해 영상이 재유포되어 2차 가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물 삭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시간 신속 심의제도를 운영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지원이 힘들다. 또한 텔레그램처럼 서버가 해외에 있고 사업자가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영상물 삭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방심위에서 말하는 '삭제'는 영상물의 완전 삭제가 아닌 '차단'을 뜻하기 때문에 영상이 다시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완전히 구제해주지 못한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기존 지원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 많은 법안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매뉴얼이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사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련 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과 유포가 일어날 경우 적시에 탐지해 삭제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24-26].

4. 미국 비영리기업, 쏘(THORN)의 아동 성범죄 예측

4.1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현장 적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인간임과 동시에 미래에 안전하기를 바라는 심리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만약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 예측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영역이 아

니다. 이미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경찰청에서 7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범죄 분석·예측 시스템인 '클루'(CLUE, Crime Layout Understanding Engine) 개발에 착수했다. 클루 시스템이 완성되면 사건 발생 시 과거 유사 사건을 신속하게 검색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검거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율을 낮추고 검거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효과적인 예측 시스템이 마련되어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4.1.1. 미국의 아동 성범죄 예측

쏘(THORN)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해 설립된 미국 비영리 기관 '쏘'(THORN)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성착취 피해 아동을 구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아동이 온라인을 통해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 거짓 프로필을 올린 후 상대방이 접근하면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쏘는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아동 성착취의 4분의 3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이러한 사실을 미국 경찰에게 전달했으나 연 10만 건이 넘는 온라인 성매매 속에서 아동 성착취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쏘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을 잡고 성매매 사이트 수십만 개의 게시물을 분석해 미성년자를 찾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쏘의 인공지능은 불과 수 초만에 아동이 올린 게시물을 찾아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찰은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시간의 65%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1만2000명의 아동을 구출하고 38세의 성범죄자가 15세의 미성년과 성매매하려는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쏘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을 미국, 캐나다의 1,300개 이상 공공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27].

프레드폴(PREDPOL)

과거에 발생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측 치안 연구를 통해 범죄 예측 프로그램 '프레드폴(PREDPOL)'이 만들어졌다. 2013년 프레드폴을 시범 운용한 캘리포니아 풋 힐 지역에서는 시스템 도입 후 범죄율이 20%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조

지아 주 애틀란타 경찰도 석 달간 두 지역에서 프레드폴을 시행한 결과 범죄율이 9% 감소했다. 프레드폴은 미국 내 60여 개의 시에서 적용되고 있다[28-30].

5. 해외 주요국들의 이슈 스캐닝(Horizon Scanning) 현황 분석

5.1 싱가포르의 국가위험관리시스템

5.1.1 잠재적 미래 사건 예측 기술, 호라이즌 스캐닝 기법

국가위험관리시스템

RAHS(Risk Assessment & Horizon Scanning)

싱가포르 국가안보조정사무국은 국가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와 국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질병, 금융, 위기 등 국가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인 ‘호라이즌 스캐닝’은 다양한 데이터를 스캐닝해 잠재적 미래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기법은 싱가포르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미래 이슈 분석을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RAHS는 시나리오 기반의 전략구성, 사회 분위기 측정을 시도해 미래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31].

5.2 효과적인 미래예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이슈 스캐닝(Horizon Scanning)

1994년 영국은 국가미래전략수립을 위해 이슈 스캐닝을 위한 HSC(Horizon Scanning Centre)를 설치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2005년부터 미래이슈 분석을 위한 Horizon Scanning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부터 총리실 산하에 잠재적 미래 이슈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RAHS(Risk Assesment Horizon Scanning)를 설치 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당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도 국가 차원의 데이터 기반 미래 이슈 스캐닝 및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전략 전담기관을 설립해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저렴한 센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SNS, 센서 데이터 등 다양한 Raw-Data를 활용하여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슈 스캐닝 기반 미래예측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

소, Data, 분석력,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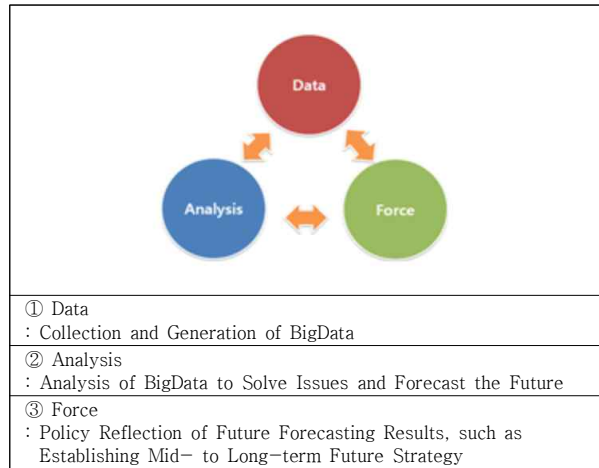


Fig. 2. 3 Elements of Issue Scanning Future Forecast[32]

이슈스캐닝 기반 국가 미래전략 수립 과정에 다음 5단계의 접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로 Data 생성 및 수집을 관리해야 하고, 둘째로는 Horizon Scanning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Data 기반 미래 이슈 분석을 위해 위험과 기회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넷째로 대응방안 마련 후, 마지막으로 기회요소 발전방향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예측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데이터에 관심을 두고 증거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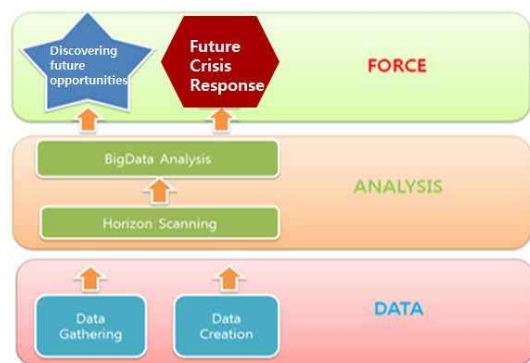


Fig. 3. National Future Strategy Phase 5[32]

인공지능이 반드시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다. 언젠가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을 활용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할 일 이므로, 우리에게선 선의의 기술을 활용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 또한 있다. 쏘(THORN)과 프레드폴(PREDPOL),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며 범죄 예측 기술이 우리의 삶에 온기를 더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참고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한국형 지능형 범죄 예방 협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고찰 및 제언

일명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 사건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벌어졌다. 닉네임 '박사'로 활동한 조주빈을 포함한 다수의 가해자는 SNS상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손에 넣었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유통했다. 잔혹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의 성을 착취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충격을 받았고 이내 공론화되었다. 이때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가해자가 2019년에 이미 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벌이 미약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국민은 더욱 분노했고, 누군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성매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8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정준영 사건'과 '기자 및 교사 단톡방 사건'을 보아도 올바른 성 인식을 갖지 못한 다수가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려면 사회적 인식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안이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이해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 시스템이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이미지 기반 학대'(Image Based Abuse, IBA)로 지칭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미지를 통해서도 성적인 학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형사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호주 법체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최근까지도 아동 성범죄 가해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미성숙한 성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해자는 다르다. 대부분이 20~30대 남성이며 특히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학창시절 우등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이 가해자가 되면서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아동 성범죄가 일어났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힘없고 통제하기 쉬운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이는 행위)을 자행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선진국에서는 성적 그루밍 단계부터 처벌 규정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 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성적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세분화된 규정이 없다. 심지어 성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회유와 협박,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영상물 삭제 및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를 내보였다. 기존의 성범죄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인 땀질식 처방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악랄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호주에는 이미지 기반 학대 촬영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기구가 설립되어 있으며 호주 의회에서는 이 기구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각종 웹사이트에 이미지 기반 학대 촬영물을 삭제하라는 통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피해자가 영상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 업체는 48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8천 600만 원 기업은 4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호주 정부는 이미지 기반 학대에 의한 피해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제반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

산 82억 원을 배정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7. 결론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한 ‘텔레그램(아동)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는 검거되기 직전까지도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운영자인 조주빈(25)이 검거된 후에도 N번방 이용자들은 경찰 수사를 조롱하는 여유까지 부렸는데 이것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강력한 보안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보다 강화된 ‘보안성’이 특징인 텔레그램은 메시지 로그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사용자가 확인한 메시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토르 브라우저나 다크웹 포럼보다도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IS 조직원이나 테러범 같은 범죄자도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갯갯이나 박사 같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안전한 앱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범죄자 추적 및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거래할 것을 유도했는데 현재 국내 4대 암호 화폐 거래소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혀 상당수의 이용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주빈(25)이 이용자들에게 송수신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해외에 거래소를 둔 모네로를 사용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 사실상 거래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암호화폐를 송신한 경우 개인 지갑 자체를 압수하기 전까지는 추적이 불가능해 이용자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잔인하고 주도면밀한 수법을 동원해 아동의 성을 착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의 추적 및 처벌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온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부재라고 할 것이다. 특히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의 경우 ‘중단 간 암호화’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사법 공조가 쉽지 않은 상태인 데다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텔레그램 가입자들

이 대거 탈퇴, 범죄에 이용된 채널들을 연쇄적으로 폭파하고 있어 기록이 삭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N번방 사건과 같은 지능적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공조를 한다고 해도 다크웹 자체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가입자들의 연쇄 탈퇴가 이어지면서 ‘디스코드’와 ‘위커’, ‘와이어’ 등 텔레그램보다 한층 보안성이 강화된 메신저로 성착취물을 유통한 현상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앱들의 특징은 텔레그램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것이며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게임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무려 6,161명에 달하는 인원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고 채팅창에서 대화를 나눈 현상이 드러났으며 이에 디스코드 역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다행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디스코드의 경우 아동에 관한 범죄는 어떤 종류든 엄격하게 처벌하는 미국 사회의 특성상 범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제공조의 필요성만 부각하며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소홀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CNN을 비롯한 외신과 국제인권단체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과 예방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두 명의 대학생이었다는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국제 사회의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국제공조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법 당국은 초범이거나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제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유통되는 플랫폼이 국내 법 체계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제는 몇 시간의 성교육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어린 나이의 가해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잔인하고 체계적인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조차 갖지 않는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특징도 가해자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죄의식의 부족과 범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며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강조했다. 이제는 예방도 범죄를 조사하는 방법도 바꿀 시기이다.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예방 차원의 기술을 융합한 체계적인 범죄 예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 조사에 있어 쏘(thorn)과 같이 기술 기반의 범죄 추적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다행히 해외의 발 빠른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범죄 분석·예측 시스템인 '클루'(CLUE, Crime Layout Understanding Engine)의 시범 운영 계획이 2019년에 발표되었다[28].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법안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아동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에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TF'를 신설, 성착취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n번방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 성착취물을 호기심에 한 번 쬐 볼 수 있는 포르노로 간주하는 문화가 암암리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한국인 이용자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돈은 지불했지만 영상을 다운받지는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받은 그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종신형까지도 선고되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참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고생 많았다는 축하 댓글을 달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추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공지능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 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N번방의 괴물을 탄생시킨 근본적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영상을 ‘호기심’에 한 번 쬐 볼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N번방은 출현할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발된 SNS의 익명성과 보안성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과 이용자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용도로 변질되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피해자들의 영상은 영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시민 사회가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동참한다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자정된 사회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A. Kim. (2019). Digital Sexual Violence and Male-Central Sex Culture.
- [2] H. J. Jung. (2019). *Child sexual exploitation Darkweb operator, reasonable punishment*. Over 200,000 petitioners. the Hankook Ilbo.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409797166570>
- [3] J. S. Kim & B. H. Lee. (2001). Research on the Status of Sexual Protection and Countermeasures for Youth, Youth Protection Committee.
- [4] Aftab, Parry. (2000). *The Parent's Guide to Protecting Your Children in Cyberspace*. McGraw-Hill.
- [5] 'The 2nd room' 10 arrests on the distribution of sexual exploitation at discords...A 12-year-old operator, too. Yeonhap news. (2020). Retrieved fr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528372&sid1=001&lfrom=twitter>
- [6] S. J. Lee, H. J. Bae, & N. Y. Yeon. (2007). Uncomfortable Truth Prostitution Market and Demand. central support center for women's rights. Retrieved From <http://web.khu.ac.kr/~happyou/img/guidebook.pdf>
- [7] K. Y. J. Kim. (2004). *Children asking for directions-Compesated datind and youth*. Book World.
- [8] S. H. Kang. (2019). Digital sexual violence content regulatio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2019(2).
- [9] BBC. (2019. 7. 2). Paedophile Matthew Bell: Why did it take so long to arrest him?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uk-49015971>
- [10] J. W. Won. (2019). children who are not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crimes. Retrieved from <http://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10229>

- [11] J. Y. Hong. (2018) Yoth who don't even receive national defense..."who is the child and youth act for?."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2970378>
- [12] H. M. Jung. (2016). Survey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Prostitu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the results of surveys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of child and youth prostitution.
- [13] J. K. Cho. (2016). The environment of child and youth prostitution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the results of surveys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of child and youth prostitution.
- [14] K. Y. Lee. (2016).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human rights related to child and youth prostitu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the results of surveys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of child and youth prostitution.
- [1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ess Release. (2017). 2016 Prostitution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 [16] J. W. Jung. (2019). children who are not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crimes. Retrieved from <http://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10229>
- [17] S. J. Park. (2020). Digital sexual exploitation is a serial killer.: Interview of the Tracer Flame, the first report of the Telegram Nth room incident. Retrieved from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telegram-nthroom-interview_kr_5e7c628ac5b6cb08a928390d
- [18] Y. J. Lee. (2006). The Violence/Occupancy Structure of Korea's Socio-cultural and Economic Soil and Prostitution, International Flows and Examples of Activities for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llection of materials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marking the 2nd anniversar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lternative Recruitment Prevention Act to prevent purchases. Central Support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 [1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ess Release. (2017). 2016 The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a survey on prostitution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 [20]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8).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locking and deleting 105,000 cases of Internet illegalities and harmful substance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Yonhap News Agency.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54100017>
- [21] S. H. Park. (2018). Requests for correc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ornography have increased six-fold over the past five years.. Retrieved from https://www.zdnet.co.kr/view/?no=20181008085807&re=R_20191119171419
- [22] Y. J. Jung, H. B. Shin & M. H. Joe. (2020). Blind spot for 'digital' sexual crimes missed by current law. Retrieved from <http://www.kunews.ac.kr>
- [23] Y. J. Kim. (2020). "I'm the person in the video." The reason why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give up their charges. No-cut issue. Retrieved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742>
- [24] H. A. Kim, S. H. Kim, Y. M. Kim, Y. J. Jang, S. H. Seo. & J. Y. Park. (2018).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the Support of Victims. research report by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 on Women and Family Affairs.
- [25] D. J. Shin. (2020). Digital sex crimes are expanding in real life, not virtual-reproduced sexual exploitation. Dong-A Ilbo. Retrieved fr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1/100422751/1>
- [26] H. J. Kim. (2020). A digital sexual exploitation case, white color is now more dangerous. Kookmin Ilbo. Retrieved fr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07575?lfrom=band>
- [27] L. Y. Kang. (2017). Artificial intelligence to catch sex offenders... This is the future. ITdonga. Retrieved from <https://it.donga.com/27161/>
- [28] Textom. (2018). Big Data to Make a Better Society (Overseas Cases). Retrieved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xtom&logNo=22127345915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 [29] S. H. Bu. (2015). Like a movie, Future Crime Prediction Program... a big success in America JTBC News Retrieved from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63693
- [30] H. S. Won. (2016). Good detective Big Data "Leave the Prediction of Crime." daily economy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it/view/2016/12/871282/>
- [31] Y. J. Song. (2012).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ata-Based National Future Strategy in Developed Countries Daegu: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 [32] J. P. Cha. (2013). Horizon Scanning, Future Strategy Center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Planning Group of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Retrieved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ean_u&logNo=15016829951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김혜진(Hyejin Kim)

[초록]



- 2006년 2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 (석사)
- 2007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장애인 재활학 (석사)
- 2009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철학 (석사)
- 2009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특수교육학 (박사)
- 2012년 8월 : 국회 입법자문위원
- 2012년 2월 : 국회 전 5급비서관
- 2010년 ~ 2020년 : 단국대, 백석대, 서경대 (외래교수)
- 2019년 6월 ~ 현재 : 글로벌 디지털 성범죄 정책연구소 대표(Global Digital Sexual Crim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020년 ~ 현재 : EC(Europe Commission) – IDIH(International collaboration digital transformation health ageing): expert group –preventive care: 국제 협업 디지털 전환 고령화 유럽 커미션- 전문가 및 심사위원
- 관심분야 : Digital Sexual Crime, Digital Healthcare Policy, healthcare big data for early prediction of dementia. Senior Wellness IT, digital sex crime
- E-Mail : hk2188@caa.columbia.edu